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23

2024년 9월 11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발의자 및 발의 경과

가.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찬성의원 14명)

나. 발 의 일 : 2024년 8월 12일

다. 회 부 일 : 2024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9월 9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자 의원)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조교수'로 정비(2011.7.21. 개정 및 시행)된 지 13년이 흘렀음에도 이를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인용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입법예고(2024. 8. 20. ~ 8. 24.) 결과: 의견 없음.

다. 입비용추계 : 비대상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검토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명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제2호(이숙자 의원안, 시장안 중복))하고,

*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1.7.21. 일부개정, 2011.7.21. 시행)

-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안 제4조의2제4호)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안 제16조), 본 조례의 두 개 조문을 개정하며(시장안),

*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02(2023.11.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 등 법제심사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시장안).

○ 본 개정조례안 2건은 법률 개정 및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개선하려는 점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명칭 관련 법령 개정(2011.7.21. 일부개정) 사항과,

-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3.11.8.) 사항에 대한 재무국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명칭(안 제4조제1항제2호, 이숙자의원안, 시장안)

○ 안 제4조제1항제2호는「고등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요건 중 대학에서의 재직경력 요건 중 현행 “전임강사” 용어를 “조교수”로 개정하려는 것임.

***〈본 개정안 관련「고등교육법」개정내용〉**

「고등교육법」

〔 법률 제10866호, 2011.7.21. 일부개정, 2011.7.21. 시행 〕

◇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이하 생략)

< 본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각 개정안 비교표 >

현 행	이숙자의원안	시장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 조교수 ----------	2.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 다만, 본 개정안은 근거법인 「고등교육법」 개정(2011.7.21.) 후 13년이 경과하였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제안서평가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개정)의 시민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재무국에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2023.12.22.)한 바 있음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 처리 결과〉

시 민 제 보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결 과 (답변내역)
□ 제보내용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제안서평가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에 맞게 개선 필요	재무국 (재무과)	□ 처리결과(답변내역) ○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본다)을 반영, 규칙상 제안서평가위원 자격조건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를 '조교수' 이상으로 개정('23.4.13)하여 공포·시행 중임

- 동일한 기관(재무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개정 수요(대학 재직경력 요건 명칭 변경)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완결성 유지를 위한 재무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숙자의원안에 대하여 재무국은 원안가결 의견을 제출하였음(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재산관리과-9971(2024.8.14.)).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근거 삭제(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시장안)

○ 시장안 제4조의2제2항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안을 삭제하여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1. ~ 3. (현행과 같음)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그러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처분이 의무화된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는바,

* 현행 본 조례 제4조의2제2항4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2019.3.28.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의 정비 권고(2023.11.8.)"를 반영하려는 것임.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규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생략한 규정

○ (관련규정)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법§16②)

○ (문 제 점)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일부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 정비

- 다만, 본 조례의 조항이 93개조에 달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 외의 추가적인 위법성 조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3)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 개선(안 제16조, 시장안)

○ 시장안 제16조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에서 '사용허가 받은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 ---------- ----------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5년 이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산(최장 20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생략)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규정하여 실제 사용 시점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사용허가 일'로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중〉

법제처에서 권리 침해사례로 정비 권고했으나, 미정비한 규정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 (관련규정)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음(법§21①)

○ (문제점) 기부채납일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한 날로서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조례에서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

4) 자구 등 정비(안 제3조 등 16개 조(條), 시장안)

○ 안 제3조 등 16개 조(條)의 개정안은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 등 법제심사 과정에서의 수정·보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 법령은 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과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가) 자구 등 정비(안 제3조 등 16개 조, 시장안)

<서울특별시 법제심사 반영사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안 제3조	각 호	각 목	법 조문 체계 적용
	용도이외	용도 외	법제심사(맞춤법)
안 제7조	시정을 요하는	시정이 필요한	법령정비기준 (일본어 투 표현)
안 제18조의2 외 5개 조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	약칭 사용* (안 25, 26, 36, 38조, 71조)
안 제30조	감면	감경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 각 호 외 부분)
	감경	감면	(제6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안 제31조 제3항	서울특별시금고은행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금고 관련 근거 조례의 정의(제2조제1호) 반영
안 제39조의2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법령 등 표시(홑낫표) 삭제(제1항)
	· 되며 ·· 위촉하되 ··· 과반수이상이	· 맡고 ·· 임명 또는 위촉하되 ··· 과반수가	자구 정리, 당연직 공무원 임명 등 구분, 의미 중복 표현 문구 삭제 (제3항)
	주사가 된다	주무관이 맡는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외직명(「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2010.6.) 반영**, (제6항)
	위원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회 의사정족수 명확화(제7항), 띄어쓰기
안 제39조의3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법령정비기준 (일본어 투 표현)
안 제47조	법위 안	범위	알법(권고안)
안 제50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前)에 나온 규정을 부정하는 의미의 법률적 표현
안 제52조	사용대상 공무원	사용자	관사: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
안 제71조	긴급처분을 요하는	긴급처분이 필요한	법령정비기준 (일본어 투 표현)
	수선을 요하는	수선이 필요한	
안 제72조	요하는	필요한	법령정비기준 (일본어 투 표현)

* 약칭(서울시/서울특별시 → "시") 사용: 안 제18조의2제1호 등 6개 조(條) 15건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적 호칭

5) 부칙

○ 본 개정조례안(2건)은 법률 개정 및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규정 없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는 본 부칙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부 칙(안)	
(이숙자의원안)	(시장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6)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2)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3)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함 (안 제16조)

4)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보완함(안 제3조 등 16개 조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3

2024년 9월 11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수정이유

○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6)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2)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3)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함 (안 제16조)

4)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보완함(안 제3조 등 16개 조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도이외”를 “용도 외”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1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안 제25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안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시가”를 “시가”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한다.

안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감면 : 학생수”를 각각 “감경 : 학생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 감면”을 “범위에서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범위 내에서 감경”을 “범위에서 감면”으로 한다.

안 제3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을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시금고”를 “시 금고”로 한다.

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각각 “시가”로 한다.

안 제38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안 제39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를 “맡고”로,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과반수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사가 된다”를 “주무관이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안 제39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47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안 제50조 단서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안 제52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안 제7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안 제72조제1항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략)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3. ---------- 각 목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 용도 외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2. ---------- 조교수 ----------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 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시정이 필요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현행과 같음)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서울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1.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울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2. ---------- 시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5. (현행과 같음)	5. 시가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시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4. (현행과 같음)	4.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시가 ----------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현행과 같음)	5. ---------- 시----------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6. 시가 ---------- 시 ----------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7. 시의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2. ---------- ---------- - 감경-------.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3. ---------- ---------- - 감경-------.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2. (현행과 같음)	2. ------ 감경 : 학생수----- ---------- -----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현행과 같음)	3. ------ 감경 : 학생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④ (현행과 같음)	④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범위에서 감경---------.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⑥ ---------- ---------- ------- 시의 ---------- ---------- ---------- ---------- ---------- - 범위에서 감면----------.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생 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시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2. ----------시금고----------. ---------- ---------- ----------.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4. (현행과 같음)	4.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 시가 ----------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7. (현행과 같음)	7. 시가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	1. (현행과 같음)	1. ---------- 시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4.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5. (현행과 같음)	5. 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 --- 시 ---------- ----------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 맡고---------- ----------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과반수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 ---------- ---------- ---------- ---------- 주무관이 맡는다.
⑦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⑦ ---------- 재적위원 과반수----------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현행과 같음)	2. --- 치료가 필요한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현행과 같음)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제50조(사용허가)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사용자----------.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현행과 같음)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현행과 같음)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현행과 같음)	1. ---------- 긴급처분이 필요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현행과 같음)	3. 수선이 필요한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	③ (현행과 같음)	③ ---------- ---- 시 ---------- ---------- ---------- ----------. ---------- ---------- ---------- ---------- 시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1. (현행과 같음)	1. ---------- 필요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도이외”를 “용도 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25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시가”를 “시가”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감면 : 학생수”를 각각 “감경 : 학생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 감면”을 “범위에서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범위 내에서 감경”을 “범위에서 감면”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을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시금고”를 “시 금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각각 “시가”로 한다.

제38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

며”를 “맡고”로,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과반수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사가 된다”를 “주무관이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39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0조 단서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2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72조제1항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 략)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 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 각 목----------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용도 외----------.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	2. ---------- 조교수 ----------

현 행	개 정 안
직경력이 있는 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 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 시정이 필요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서울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1.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울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 시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5. 시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0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 시가 ----------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 시----------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6. 시가 ---------- 시 ----------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7. 시의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 감경-------.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 감경-------.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2. ------ 감경 : 학생수----------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 감경 : 학생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 범위에서 감경---------.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⑥ ---------- 시의 ----------

현 행	개 정 안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범위에서 감면----------.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생 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 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④ ----------. ---------- 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2. ---------- 시 금고----------. ----------.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 시가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7. 시가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1. ---------- 시 ----------

현 행	개 정 안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 ---------- 시 ---. ----------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	5. 시 ---------. --- 시 ----------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 맡고----------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과반수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⑥ ---------- 주무관이 맡는다.
⑦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재적위원 과반수----------.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치료가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허가)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사용자----------.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	1. ---------- 긴급처분이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③ ---------- 시 ----------. ---------- 시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1. ---------- 필요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